
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505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20.

발 의 자 : 이 훈 · 정인화 · 신경민
박 정 · 김성수 · 신창현
우원식 · 황주홍 · 문미옥
김종훈 · 조정식 · 양승조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본 법은 전기공사의 시공·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.

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공사업체 1만 3,811개 업체 중 시공능력평 가액 상위 5%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52%를 차지하고, 시평액 상위 20%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77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. 하지만 현행법상 상위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전기공사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유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.

이에 우선적으로 국가·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 할 경우,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

을 보장하고자 함(제38조제2항제4호 개정 및 제39조제3항 신설).
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

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제4호 중 “중소공사업자”를 “중소공사업자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공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8조(공사업의 진흥시책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 략) 4. <u>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</u> <p>5. (생 략)</p> <p>제39조(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38조(공사업의 진흥시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중소공사업자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공사업자를 말한다.</u> <u>이하 같다)</u>----- 5. (현행과 같음) <p>제39조(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.</u></p>